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」 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 국

2024년 11월 27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 98 호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. 주민등록초본(거주지 확인용)

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③ 장애인, 청년, 한부모 가정, 북한이탈주민, 기초생활수급자, 다문화가정, 인턴(군포도시공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) 등에 대한 가산 점수는 채용계획 수립 시 인사위원회 심의·의결을 통해 결정한다.

제9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.

4. ~~국가보훈부의 증명이 가능한 취업지원대상자~~

2024-11-26 17:40:14 / 청렴감사팀 / 이*화 / *.*.20.168

부 칙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실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장 이 현 동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	담당자 성명 (전 화)	현 진 환 (3 9 0 - 7 6 4 1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신규채용) ①~③ (생략) ④ 제2항 제4호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. 1. NCS 블라인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. 주민등록등본(거주지 확인용) 3.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4. 자격증사본(해당자에 한함) 5.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6. 기타 필요서류 제5조(필기시험 과목 및 가산점수) ①~② (생략) ③ 장애인, 청년, 한부모 가정, 북한이탈주민, 기초생활수급자, 인턴(군포도시공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)에 대한 가산 점수는 채용계획 수립 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.	제3조(신규채용) ①~③ (생략) ④ (생략) 1. (현행과같음) 2. 주민등록초본(거주지 확인용) 3.~6. (현행과같음) 제5조(필기시험 과목 및 가산점수) ①~② (생략) ③ ------,-----,----------,----------,----------, 다문화가정, 인턴(군포도시공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) 등에 대한 가산 점수는 채용계획 수립 시 인사위원회 심의·의결을 통해 결정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합격자 결정) ①~③ (생략) ④ 제3항의 시험결과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. 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. 필기시험 고득점자 3. 해당 자격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장기인 자 4. 국가보훈부의 증명이 가능한 취업지원대상자	제9조(합격자 결정) ①~③ (생략) ④ (생략) 1.~3. (현행과 같음) 4. (삭제)